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5

발의연월일: 2020. 7. 15.

발 의 자: 박홍근 · 양이원영 · 양정숙

양기대 • 박성준 • 최종윤

조오섭 · 박영순 · 홍성국

홍익표 · 서동용 · 김용민

남인순 • 아수진비 • 윤미향

박상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자도로의 유지·관리 및 운영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·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(5년) 및 유지관리시행계획(매년)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, 정체구간 관리 소홀, 휴게시설 안 전관리 미흡,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 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 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,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).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 (이하 "유지관리계획"이라 한다)과 1년 단위의 도로 유지·보수 및 운영계획(이하 "유지관리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민자도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
- 2. 민자도로의 관리,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·운용에 관한 사항
- 3. 민자도로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
- 4. 민자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 전에 관한 사항
- 5. 민자도로의 경관(景觀) 제고에 관한 사항
- 6. 민자도로의 교통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- 7. 그 밖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유료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 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2의2. 제2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 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3조의3(민자도로사업자의	의	제23조의3(민자도로사업자의 의
무) ① ~ ③ (생 략)		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
		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
		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
		위의 중기 유지·관리 및 운영
		에 관한 계획(이하 "유지관리
		계획"이라 한다)과 1년 단위의
		도로 유지·보수 및 운영계획(이
		하 "유지관리시행계획"이라 한
		<u>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	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
		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
		함되어야 한다.
		1. 민자도로의 관리 및 운영에
		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
		2. 민자도로의 관리, 도로 및
		도로 자산의 활용·운용에 관
		<u>한 사항</u>
		3. 민자도로의 관리 등에 필요
		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
		<u>관한 사항</u>
		4. 민자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·

<신 설>

<신 설>

-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 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
- 5. 민자도로의 경관(景觀) 제고에 관한 사항
- 6. 민자도로의 교통관리에 관한

 정보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

 사항
- 7. 그 밖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유료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28조(과태료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23조의3제4항을 위반하
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
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
립하지 아니한 자
3. (현행과 같음)
②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
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
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
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